

[별표 17] <개정 1996.7.29, 1999.7.15, 2004.2.2>

행정처분기준(제52조관련)

항 목	위 반 사 항	적용법령	처 분 기 준					
			취 소	효 력 정 지				경 고
				6 월	3 월	1 월	15 일	
1.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제조업자	1.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	법 제45조 (법 제5조)	○					
	2. 속임수를 쓰거나 그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45조	○					
	3. 제조소 또는 제조시설 및 화약류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	법 제45조	○					
	4. 제조시설·설비 또는 화약류 저장소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못한 때	법 제45조 (법 제43조)	○					
	5. 제조총포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○1회위반 ○2회위반	법 제45조 (법 제42조)	○ ○	○				
	6.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품양도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	법 제45조 (법 제21조)	○ ○	○ ○	○			
	7. 행정처분기간중 계속 조업	법 제45조	○					
	8. 법에 의한 지시명령 위반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	법 제45조		○ ○		○		○

	○4회위반		○					
	9. 지정기간내 사업 미개시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	법 제45조	○	○		○		
	10.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휴업	법 제45조	○					
	11.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○1회위반 ○2회이상 ○3회이상 위반	법 제45조		○	○	○		
	12. 무허가 수출입의 경우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	법 제45조 (법 제9조)	○	○		○		
	13. 제조보안책임자 선임의무 위반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 ○4회위반	법 제27조 영 제54조	○	○	○		○	
	14. 화약류 안정도 시험 불이행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 ○4회위반	법 제32조 영 제59조	○	○	○		○	
	15. 화약류 포장 기준위반	법 제34조					○	
	16. 도난신고 불이행	법 제35조					○	
	17. 위해예방 규정 준수 불이행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38조				○	○	

18. 자체 안전교육 불성실 또는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39조 법 제40조				○	○	
19. 정부 불실기재 또는 미기재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	법 제63조 영 제81조		○	○		○	
20. 간판 그밖의 표지 미개시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64조					○	○
21. 제조종류 및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 또는 설치한 경우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이상 위반	법 제4조	○	○		○		
22. 응급조치 불이행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36조 영 제65조				○	○	
23. 공실의 정원 또는 정체량 초과 작업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4조					○	○
24. 화약류 폐기신고 또는 기준위반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20조					○	○
25.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47조				○	○	
26.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	법 제45조	○					

	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때							
	27.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불이행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	법 제45조	○				○	○
2.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판매업자	1.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	법 제45조 (법 제7조)	○					
	2. 속임수를 쓰거나 그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판매업소를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탁·대여·양도한 때	법 제45조 (법 제6조)	○					
	3. 총포·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판매업소 또는 화약류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	법 제45조 (법 제6조)	○					
	4. 판매시설·설비 또는 화약류 저장소에 대해 지정된 기간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	법 제45조 (법 제43조)	○					
	5. 검사합격의 표시가 없는 총포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때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이상 위반	법 제45조 (법 제42조)	○	○	○			
	6. 소지 또는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양도 ○1회위반 ○2회위반	법 제21조		○	○			

○3회위반		○					
7. 이 규칙이 정하는 공기총의 성능기준을 초과하여 압축공기 또는 가스를 주입한 때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	법 제45조	○	○	○			
8. 행정처분 기간중 계속 조업	법 제45조	○					
9. 법에 의한 지시명령 위반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 ○4회위반	법 제45조	○	○		○		○
10. 지정기간내 사업 미개시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	법 제45조	○	○		○		
11.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휴업하거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	법 제45조	○					
12.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○1회위반 ○2회이상 ○3회이상 위반	법 제45조		○	○	○		
13. 무허가 수출입의 경우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	법 제45조 (제9조)	○	○		○		
14. 관리보안책임자 선임의무 위반 ○1회위반 ○2회위반	법 제27조 영 제55조			○		○	

	○3회위반 ○4회위반		○	○				
	15. 분실·도난신고 불이행	법 제35조					○	
	16.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40조 영 제66조				○	○	
	17. 장부의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이상 위반	법 제63조 영 제81조		○	○		○	
	18. 간판 또는 표지 미게시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64조					○	○
	19. 화약의 변형 또는 총기구 조 및 성능의 임의개조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	법 제4조	○	○		○		
	20. 화약류 폐기신고 또는 폐 기기준위반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20조 영 제30조					○	○
	21. 안전방호를위한 명령불이행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47조				○	○	
3. 화약류저장 소 설치사 용자	22. 판매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불이행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	법 제45조	○				○	○
	1. 허가조건 결격사유 발생	법 제45조 (법 제5조)	○					
	2. 속임수를 쓰거나 그밖의 옳	법 제45조	○					

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							
3. 화약류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	법 제45조 (법 제25조)	○					
4. 지정된 기간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	법 제45조 (법 제43조)	○					
5. 법에 의한 지시명령 위반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 ○4회위반	법 제45조	○	○		○		○
6. 지정기간내 불사용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	법 제45조	○	○		○		
7.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용폐지	법 제45조	○					
8.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○1회위반 ○2회이상 ○3회이상 위반	법 제45조		○	○	○		
9. 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 또는 대여한 경우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	법 제24조	○	○		○		
10. 행정처분 기간중 계속 사용	법 제45조	○					
11. 분실·도난신고 불이행	법 제35조					○	
12.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40조 영 제66조				○	○	

	13. 장부 불실기재 또는 미기재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이상 위반	법 제63조 영 제81조					○	
	14. 저장정량 초과저장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	법 제24조					○	
	15. 보안거리 미달(보안물건침범)	법 제47조						감량 또는 이전 명령
	16. 응급조치 불이행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36조					○	
	17. 안전·방호를 위한 명령 불 이행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47조					○	
	18.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 위승계신고 불이행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	법 제45조					○	○
4. 화약류제조· 관리보안책 임자	1. 면허의 미갱신	법 제28조	○					
	2. 화약류제조·관리보안책임자 결 격사유 발생	법 제29조	○					
	3. 금고이상의 형 수형	법 제30조	○					
	4. 이법에 의한 벌금형 수형	법 제30조 (법 제29조)	○					
	5. 속임수를 쓰거나 그밖의 옳 지못한 방법으로 면허취득	법 제30조	○					

	6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○취소된 경우 ○정지된 경우	법 제30조	○					기술 자격 정지 기간 동안 면허 정지
	7. 면허를 다른사람에게 대여한 경우	법 제30조	○					
	8. 고의에 의하여 폭발사고를 야기한 경우	법 제30조	○					
	9. 과실에 의해 폭발사고를 야기하여 인명을 사상케한 경우 ○10명사상 ○ 5명사상 ○ 1명사상	법 제30조		○		○		
	10. 법에 의한 지시명령 위반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 ○4회위반	법 제45조				○		○
	11. 감독직무위반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31조				○	○	
	12. 응급조치불이행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36조				○	○	
5.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소지 사용자	1.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	법 제46조 (법 제13조)	○					
	2. 소지허가 받은 총포의 임의개조	법 제46조 (법 제17조)	○					
	3. 총포소지허가의 미갱신	법 제16조	○					
	4.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	법 제35조						

충격기·석공의 도난·분실사고 불이행						○	
5.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 충격기·석공의 소지허가를 받 지 아니한 사람에게 양도 ○1회위반 ○2회위반	법 제21조	○	○				
6.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 자충격기·석공의 허가받은 용도의 사용	법 제46조 (법 제17조)	○					
7. 정당한 사유없는 총포·도검· 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 석공의 소지운반	법 제46조 (법 제17조)	○					
8.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○1회위반 ○2회위반 ○3회위반 ○4회위반	법 제46조 법 제47조	○		○	○		○
9. 취급금지 위반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19조				○	○	
10.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 임의무 불이행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27조				○	○	
11. 화약류취급소 미설치 사용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영 제17조				○	○	
12.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기 준 위반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영 제18조 내지 제23조					○	○

	13. 화약류 폐기신고 및 기준 위반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영 제14조 영 제24조 영 제62조						○
	14.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등 저장기준 위반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24조 영 제27조			○		○	
	15. 화약류운반신고 의무위반 또는 화약류운반시 적재 방법 기술기준 위반 ○1회위반 ○2회이상 위반	법 제26조 법 제39조 영 제49조				○	○	

(주)

1.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(무거운 처벌기준이 동일할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)에 의한다.
2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.
3. 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일괄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제5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산업용총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행정처분을 행한다.